

(報 告)

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대한변안동의안

의안 번호	85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11월 3 일

발 의 자 : 박문석 의원 외 1 인

1. 변안이유

성남시의회 포상규정 개정 규정안중 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
과정을 보완하여 추천권자를 명백히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의회 공적심사 위원회 위원 보강(안 제11조 제2항)
 - “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1인씩을 추천하여”로 함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심 사 안	수 정 안
제1조(의회공적심사위원회) ①(생략)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인 및 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두되 의정담당 주사가 된다.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5호 서 식에 의한다	제1조(의회공적심사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 ② _____ _____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4인 이내로 _____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_____	제1조(의회공적심사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 ② _____ _____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 1인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전문위원 1인으로 _____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(개정안과 같음)	제1조(의회공적심사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 ② _____ _____ “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1인씩을 추천하여”로 _____ ③ (심사안과 같음) ④ (심사안과 같음)

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에대한변안동의안

성남시의회포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변안한다.

제11조제2항중 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 1인씩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”를 “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1인씩을 추천 하여”로 한다.